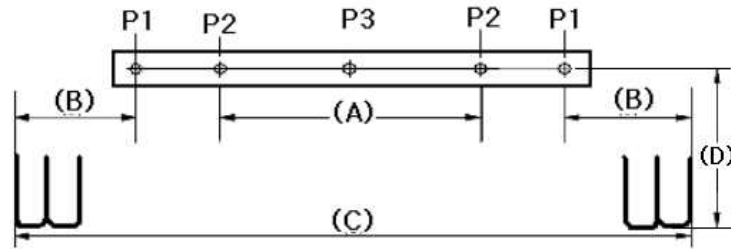


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(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)

1. 시험하중

가. P1점 및 P3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25퍼센트 또는 50킬로뉴톤 중 작은값, P2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0킬로뉴톤 중 작은값으로 한다.

나.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.



(A) 700mm ~ 1000mm이하

(B) 300 ± 25 mm 이내

(C) 차량 뒷 측 바깥바퀴의 폭(표준공기압에서의 지면에 접지된 상태의 최외측)

(D) 600mm 이하 : 종전에는 중심에 하중 적용

2. 설치강도

제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2미터 이하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은 4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